

- 수출 초보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6.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 모집기간: 공고일~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상 도내 본사나 공장을 소재한 제조업 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수출(희망) 중소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수출역량진단 참여: 진흥원 및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사이트 내 팝업창 확인)
- 지원제외: 유사사업 및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방식: 총사업비 내에서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서 등 증빙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 지급 **※ 조기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사항

구분	내용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필요한 지원사항 선택 - 공급가액 90% 지원, 공급가액 10%+부가세 자부담 - 부가세 및 금액 한도 초과 시 업체 자부담	
지원내용	①수출 통관 컨설팅	200만원 한도
	②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③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④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⑤온라인 마케팅	각 300만원 한도 ※번역요금표 참고
	⑥해외규격인증 획득	500만원 한도

① 수출 통관 컨설팅

○ 지원분야

- 현지 법률상 수입 금지 품목 여부, 원료 사용 가능 여부, 성분 사전검토, 현지 식품법에 맞는 라벨 번역, 국가별 수출을 위한 현지 등록 허가 대행 컨설팅 등
- 수출신고필증, B/L 사본, 품목별 HS코드(세번, 품목, 분류) 자료, 원산지 증명서 등

○ 지원내용

- 시장 테스트 품목 수출을 위한 통관, 라벨등록 등 컨설팅 비용
- 신규 국가(시장) 정식통관 진행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 지원업체 요구 시 관련 국가별 제품별 무역 전문가를 매칭하여 수출 맞춤 지원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범위: 업체당 200만원 한도(공급가액 90% 지원, 공급가액 10%+부가세 자부담)

②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 지원분야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용 지원(번역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신청)

○ 지원내용

- 샘플: 수출국가 바이어 요청에 따른 상품 현지화를 위한 제품 재구성(규격, 용량), 원료 제작
- 디자인: 바이어 요청에 의한 기존 상품의 현지화를 위한 디자인(규격, 용량) 리뉴얼 등
- 홍보물: 외국어 리플릿, 팸플릿, X-배너, 카탈로그, 홍보동영상, POP, 제품 디스플레이용 키트 제작 등

○ 지원범위: 업체당 300만원 한도(공급가액 90% 지원, 공급가액 10%+부가세 자부담)

○ 기타사항

- 기존 제품에 대한 바이어 변경요청 혹은 해외시장 진출 필요에 의해 변경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
- 홍보물 제작 등 제작물에 대해서는 최종 완성본(인쇄본) 제출 필수

③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 지원내용

- 글로벌 전자무역 및 모바일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외국어 상세페이지 및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제작
- 상세페이지 및 홈페이지 이미지 디자인, 제작, 번역 등 제작 소요비용

○ 지원범위: 업체당 300만원 한도(공급가액 90% 지원, 공급가액 10%+부가세 자부담)

④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 지원내용

- 수출기업 회사 및 제품 소개서, 수출기업 홍보자료, 계약서 및 바이어 미팅 통역, 기타 무역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통·번역 등

○ 지원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 지원범위: 업체당 300만원 한도(공급가액 90% 지원, 공급가액 10%+부가세 자부담)

○ 기타사항

<통역 서비스>

※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외에서 인적(근로)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를 지급함.

<번역 서비스>

※ 번역 요율표 ±20% 이내 지원가능(기타 언어의 경우, 별도 협의 후 진행)

번역 요율표					
번역 언어		규격	실페이지 (환산장수)	단가 (공급가액)	비고
1	한국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A4	1.0	25,000	한글 550자/장
2	영어, 중국어, 일본어 → 한국어			20,000	외국어 550자/장
3	한국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카탈로그			30,000	한글 550자/장
4	영어, 중국어, 일본어 → 한국어 카탈로그			20,000	외국어 550자/장

⑤ 온라인 마케팅

○ 지원내용: 제주상품의 인지도 강화 및 바이어 발굴·판로 개척을 위한 온라인 해외 마케팅활동 (네이버, 쿠팡 등 국내시장 마케팅 불가)

○ 지원분야: 키워드광고, SNS페이지 광고 등의 온라인 마케팅

○ 지원범위: 업체당 300만원 한도(공급가액 90% 지원, 공급가액 10%+부가세 자부담)

⑥ 해외규격인증 획득

○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따른 컨설팅 비용 및 획득비용(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등)

○ 지원분야: 중국위생허가(CFDA), 미국식품의약품국(FDA), 이슬람 음식 및 영양협회(HALAL)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 지원범위: 업체당 500만원 한도(공급가액 90% 지원, 공급가액 10%+부가세 자부담)

○ 기타사항: **신청 이전 해당 인증의 지원 가능 여부 및 인증 종류에 대하여 진흥원 사전 확인 필수, 인증서 사본 필수제출**

3 사업추진 방식 및 지원절차

순번	구분	세부절차
1	사업공고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및 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고
2	사업신청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www.jejutrade.or.kr/index.htm)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사업 참가신청 → '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 첨부파일(신청 시 제출서류) 업로드 · 역량평가 진단 결과 초보기업만 가능
3	대상확인	·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기업 개별 확인 및 결과보고서 서식 송부 · 지원금 지급은 대상확인과 별도로 정산신청 순으로 지급
4	사업추진	· 기업별 자율 사업 시행 (사후정산) ※ 공고 전 2026년 1~3월 소급 적용 가능
5	정산신청	· 정산신청 구비서류 후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6	지원금 지급	· 증빙서류 검토 완료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금 지급 ※ 서류 미비 또는 과다 청구 등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 선착순 청구에 따른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 불가

4 지원신청 및 정산신청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비고
신청서류 (제주전자무역 지원시스템)	1. 신청서 1부	【붙임 1】
	2. 서약서 1부	【붙임 2】
	3. 동의서 1부	【붙임 3】
	4. 2026년 수출 역량진단 결과보고서	수출초보
	5. 사업자등록증 1부	
정산서류 (담당 이메일)	1. 정산서 1부	【붙임 4】
	2. 통장사본 1부	
	3.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4. 결과보고서 1부	별 첨
	5. 세금계산서	
	6. 납부내역(송금확인증 등)	
	7. 견적서	
	8. 납품서(완료계)	
	9. 통역비 수령증(통역 신청 시)	별 첨

※ 상기 구비서류와 별도로 증빙과 관련 추가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 진흥원 유사사업 및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 신청기업 중복지원 불가함
- 허위사실 및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 사업비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조치 당할 수 있음
- 서류 미비 및 불명확한 서류 등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관리기관의 판단하에 제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 매 지원 항목별 소요금액이 일반적인 시장가(타사 비교견적 등)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과다 청구 등으로 판단되어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 지원(청구)금액보다 사업비 잔액이 적은 경우 청구(금액) 전액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선정 시, 참여기업 2026 성과 및 만족도 조사 필수참여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참가 제한
- 동일 사업에 중복지원을 받거나 허위 신청한 경우: 사업비 전액 반납 및 진흥원 수출 관련 전 사업 3년간 참가 제한(해당연도 포함)

6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주임 고예진
- ☎ 064-805-3388 / ✉ yejinyejin@jba.or.kr
-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4층 통상물류팀

<붙임 1>

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업 체 정 보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대표자	성 명:	휴대전화:	
	직통번호:	이 메 일:	
담당자	성 명:	직 책:	휴대전화:
	직통번호:	이 메 일:	
설립일	(사업기간: 년)	주요 생산품	
2026년도 타기관 지원여부		여 () 부 ()	※중복지원 불가
신청 내용 (해당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선택)			
<input type="checkbox"/> 수출 통관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input type="checkbox"/>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input type="checkbox"/>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마케팅(SNS, 인플루언서 등)			
<input type="checkbox"/> 해외규격인증 획득			
필 수 제 출 서 류		사 업 계 획 요 약	
1. 신청서 < 붙임 1 > 2. 서약서 < 붙임 2 > 3. 동의서 < 붙임 3 > 4. 수출 역량진단 결과보고서 < 2026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요약 작성>	
당사는 상기와 같이 ‘2026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을 신청하며,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복지원일 경우 지원금 전체에 대해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기재 시 유의사항			
1. 청구신청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집행을 진행하므로 청구 시 예산소진이 될 수 있음			
2. 허위사실 기재 시 지원이 제외 될 수 있음			
3. 부가세 · 한도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진행			
2026년 월 일			
대표자 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붙임 2>

「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서약서

당사는 ‘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숙지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2. 진흥원 유사사업 및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용도 외 사용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①

